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5
----------	------

발의연월일 : 2025. 6. 5.

발의의원 : 곽동환 의원,

박주용 의원, 신동윤 의원

1. 제안이유

건축물 착공신고 시 안전관리에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건축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건축법」 개정예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효율적인 건축행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건축구조 분야에 전문위원회 구성 의무화(안 제9조제1항)
- 나. 안전관리에치금 예치 건축물 연면적 확대(안 제19조제1항)
- 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확대(안 제22조제3항제5호~제7호)
- 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및 연장 제한 근거 마련(안 제22조제5항·제6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이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 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한옥 등”을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중 “아니 된다”를 “안된다”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건축물은” 을 “납부대상 건축물이” 로,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를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란” 을 “하며, 건축공사비는” 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르거나” 로 한다.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치금(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 납부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제21조 단서 중 “아니한다” 를 “않는다” 로 한다.

제22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 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비가림 및 공기 막구조물 등의 건축물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기능·구조가 저하되거나 가설건축물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제5호 중 “수수한”을 “주고 받은”으로 한다.

제34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고”를 “않고”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40조제5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예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4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아닌 관계법령·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게 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건축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 6. (생략)

7. 그 밖에 법령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군수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

----- 범위 -----
-----.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 및 절차) ①

-----.

1. ~ 6. (현행과 같음)

7. ----- 회의
에 부치는 -----

② -----

-----.

1. -----

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 4. (생략)

③·④ (생략)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④ (생략)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

가. -----
----- 않을 -----

나. -----

않는 -----

2.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

예외로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위원회) ① -----

----- 영 제5
조의5제6항제2호차목에 따라 건축구
조 분야에 대하여 전문위원회를 두어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6조를 준용한다.

② (생략)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 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 “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 ⑥ (생략)

⑦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

----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 납부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 납부대상 건축물이 -----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 하며, 건축공사비는 -----.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

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② (생략)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

----- 않는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비가림 및 공기막구조물 등의 건축물

④ (생략)

<신설>

<신설>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공사감리자의 지정) ①·②

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기능·구조가 저하되거나 가설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

----- 않고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 -----

-----.

제25조(공사감리자의 지정) ①·②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영 제3조의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

-----.

1. ~ 5. (현행과 같음)

6. ----- 않다고 -----

제4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

1. ~ 4. (현행과 같음)

5. ----- 않는 -----

제4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

-----.

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②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또는 영 제119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⑤ (생략)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생략)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예외로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

----- 않는 -----
----- 않는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 -----

----- 않은 -----

□ 「건축법(법률)」(2024.3.26. 일부개정, 2024.3.27. 시행)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2025.1.21. 타법개정·시행)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⑦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횡수별 3년의 범위에서 제5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횡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제3호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농지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 일부개정, 2025.1.24. 시행)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라.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농막·농촌체류형 쉼터·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농지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2025.1.24. 일부개정·시행)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의2.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

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대구광역시 달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를 필수로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안 제9조제1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위원회 참석 수당 등 운영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예상됨(안 제9조제1항)

작 성 자

소 속 및 직 위

달 성 군 의 회 의 원

성 명 (연 락 처)

곽 동 환 (☎ 2057)